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946
----------	-----

제 안 년 월 일 : 2023년 07월 03일

발 의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박성연 의원이 2023년 5월 26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51)과 서울특별시장이 2023년 5월 30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7)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제319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3. 7. 3.)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한 ‘위원구성협의체’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특정성(性) 편중 방지 및 직종 다양화를 이루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제2항 및 제3항)
- 위원구성협의체 운영 조항 신설(안 제4조의2 제4항부터 제6항)
-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4조의3)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목 중 “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회”라 하고, 내용 중 “서울특별시 자치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

④ 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

-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⑥ 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경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3(서울특별시의회의 위원 추천) 서울특별시의회가 법 제2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할 때에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생략)</p> <p>②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u>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질 수 있도록 미리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p> <p>③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u>는 영 제2조 제3호에 따라 자치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다른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3조(<u>자치경찰위원회</u>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신 설></p>	<p>제2조(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 ----- ----- ----- -----.</p> <p>③ <u>위원회</u>----- ----- ----- ----- -----.</p> <p>제3조(<u>위원회</u>의 설치 및 기능) ----- ----- ----- ----- ----- ----- -- <u>위원회</u>-----.</p> <p>제4조의2(<u>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u>) ①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u>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u></p>

현행	개정안
<신설>	<p><u>위원구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u></p> <p>② <u>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신설>	<p>③ <u>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맡고, 위원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추천권자 및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지명권자가 각각 1명씩 지정한다.</u></p>
<신설>	<p>④ <u>협의체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날 자동 해산한다.</u></p>
<신설>	<p>⑤ <u>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u></p>
<신설>	<p>⑥ <u>협의체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에 성별·경력별로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신설>	<p>⑦ <u>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u></p>
<신설>	<p>⑧ <u>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u></p>

현행	개정안
<p data-bbox="172 367 322 405"><신설></p> <p data-bbox="172 689 782 969">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위원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및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p>	<p data-bbox="858 286 1276 324"><u>협약체의 위원장이 정한다.</u></p> <p data-bbox="810 367 1426 405"><u>제4조의3(서울특별시의회의 위원 추천)</u></p> <p data-bbox="850 427 1426 645"><u>서울특별시의회가 법 제2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 할 때에는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 data-bbox="810 689 1414 969">제11조(위원의 수당)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p>